평택 고덕신도시 A-42BL 제일풍경채 3차 센텀 입주자 모집공고

풍경채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평택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센텀」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www.gd2-jeil.co.kr) 운영 및 방문예약제를 통한 적정 인원의 내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약자 본인 외 동반 입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은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센텀」 홈페이지(www.gd2-jeil.co.kr)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시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833-4187)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Ⅵ.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Ⅶ. 계약체결」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견본주택 내방시 : 당첨자 1인만 내방 가능(동행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833-4187)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방 가능 일자 및 예약방법**

구 분	사전 예약 일시	견본주택 내방 가능 일시
일 정	9월 7일(월) ~ 9월 10일(목)	9월 11일(금) ~ 9월 13일(일)
방 법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시간대별 20명 이하 내방 예약 가능
내 용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만 가능하며 유선상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시간대별 20명 이하 예약만 가능합니다. •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정책 등에 따라 기존 예약을 하셨더라도 취소 및 내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기간 안내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예약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일 정	9월 23일(수) ~ 9월 28일(월)	10월 05일(월) ~ 10월 11일(일)
방 법	당첨자 개별 전화연락을 통한 방문 일시 예약	시간대별 20명 이하 내방 예약 가능
내 용	• 당첨자가 당사 대표번호(☎1833-4187)로 직접 전화를 통한 예약 가능 • 당사 상담인원이 당첨자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 연결시 해당 상담인원을 통한 예약 가능 ※ 사업주체는 당첨자 개인별 연락처 변경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한 청약시 입력 전화번호를 통한 연락이 가능하오니 청약홈을 이용하여 청약시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동일 유형의 당첨자라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서류제출 시간 및 상담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사전서류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당첨자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제출 기간 내 내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사전서류제출 및 추첨시 대상 세대를 고려하여 앞순번 일부 세대만 우선 접수 및 추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0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2020.06.19.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경기도 전체(일부 제외)로 확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경기 전역(일부 제외), 인천 전역(강화, 옹진 제외), 지방[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일부 제외)]
2.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경기[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인천(연수, 남동, 서구), 지방[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구(수성구), 대전(동, 중, 서, 유성)]
3. 투기지역 :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청약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 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04.) 현재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04.)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2019.09.04.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2020.03.04.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을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정	9월 14일(월)	9월 15일(화)	9월 16일(수)	9월 22일(화)	10월 5일(월) ~ 10월 11일(일)	10월 13일(화) ~ 10월 17일(토)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6:00)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주택과 – 37306호(2020.09.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2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최고 32층 9개동 총8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53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8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64세대,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2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하층 배정세대	입주 예정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2020001030	01	75.7246A	75A	75.7246	24.2701	99.9947	41.6633	141.6580	57.7411	142	12	12	24	3	91	6	2023년 03월 예정
		02	84.9080A	84A	84.9080	27.1086	112.0166	46.7160	158.7326	64.7436	363	43	44	88	14	174	14	
		03	84.9279B	84B	84.9279	27.7168	112.6447	46.7270	159.3717	64.7588	161	14	13	26	4	104	6	
		04	84.9080C	84C	84.9080	27.4632	112.3712	46.7160	159.0872	64.7436	154	13	13	26	4	98	6	
합 계											820	82	82	164	25	467	32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동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 도 금 (60%)						잔 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20.11.20.	21.03.10.	21.07.10.	21.11.10.	22.03.10.	22.07.10.	22.11.10.	입주지정일
75.7246A	1302동, 1305동 1308동 1, 2호 라인	142	1층	2	170,730,000	201,270,000	372,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2층	2	170,730,000	217,270,000	388,000,000	10,000,000	2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16,400,000
			3층	6	170,730,000	230,270,000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4층	6	170,730,000	243,270,000	414,000,000	10,000,000	3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24,200,000
			5층 이상	126	170,730,000	251,270,000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84.9080A	1301동, 1304동 1305동, 1306동 1307동, 1308동 3, 5호 라인 1303동, 1309동 3호 라인	363	1층	14	191,435,000	220,565,000	412,000,000	10,000,000	3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2층	14	191,435,000	239,565,000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3층	14	191,435,000	253,565,000	445,000,000	10,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4층	14	191,435,000	267,565,000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5층 이상	307	191,435,000	277,565,000	469,000,000	10,000,000	3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84.9279B	1301동, 1303동 1304동, 1306동 1307동, 1309동 2호 라인	161	1층	6	191,480,000	215,520,000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2층	6	191,480,000	234,520,00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3층	6	191,480,000	248,520,000	440,000,000	10,000,000	3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4층	6	191,480,000	262,520,000	454,000,000	10,000,000	3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5층 이상	137	191,480,000	271,520,000	463,000,000	10,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84.9080C	1301동, 1303동 1304동, 1306동 1307동, 1309동 1호 라인	154	2층	5	191,435,000	233,565,000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3층	6	191,435,000	247,565,000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4층	6	191,435,000	261,565,000	453,000,000	10,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5층 이상	137	191,435,000	270,565,000	462,000,000	10,000,000	3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38,600,000

※ 계약금 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되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총합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오차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지하주차장 포함),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가격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되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계약금 2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제이제이건설(주)	제일건설(주)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나동 2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등록번호	211311-0002248	135811-0093658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gd2-jeil.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3-4 ▣ 분양문의 : 1833-418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문의 1833-4187

시행 | 제이제이건설(주) 시공 | 제일건설(주)